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위임범위를 규정하여 처리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운영·관련 조항 신설(안 제4조~제4조의4)

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

: (현행) 소장 → (개정) 시장

다.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3조의2)

라. 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임 범위 규정 (안 제3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장”이란”을 ““수탁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로, “운영관리”를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관리”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운영·관리”를 삽입한다.

제4조의 제목 “(관리업무의 대행)”을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한다.
-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수탁 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3(지휘·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의4(처리상황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앞에 “제2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3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를 삽입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 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같은 항 중 “접속시켜야”를 “접속시켜야 하며, 맨홀에 접속하여 매립하기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배출하는”을 “배출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배수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을 삽입한다.

제15조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사용료의 부담”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사용료의 부담”을 삽입한다.

제19조제3항 중 “소장”을 “시장”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을 “수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장”을 “시장”으로, “시장을 대신하여 월별”을 “월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9

조”를 “시장은 제9조제1항의”로, “대해서 소장이”를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자가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수탁자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부담금의 추정)”을 “(부담금의 추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장”을 “시장”으로, “배수기준”을 “배출기준”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배출부과금) ①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수탁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관할유역환경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앞에 “제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채납처분”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6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을 삽입한다.

제25조제1항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소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7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배수설비 개·보수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 오·폐수 산정에 관한 사항
5. 제28조의 자료 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제31조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

제33조(시행규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사

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장이 한 부담금 부과 및 그 밖의 처분은 시장 및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자가 처분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4호서식]

## 설치 부담금

(     분기) 부담금 납부고지서

|                                                                                                      |                  |  |  |
|------------------------------------------------------------------------------------------------------|------------------|--|--|
| 금 액                                                                                                  | 총계 :<br>원금<br>이자 |  |  |
| 납 부 기 한                                                                                              |                  |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
| 납 부 기 관                                                                                              |                  |  |  |
| 세 입 과 목                                                                                              |                  |  |  |
| 부담근거                                                                                                 |                  |  |  |
|                                                                                                      |                  |  |  |
|                                                                                                      |                  |  |  |
| <p>부과일자 :    년    월    일</p> <p>상기와 같이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br/>설치부담금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p> <p>구 미 시 장</p> |                  |  |  |

## 영수증

(     분기) 설치 부담금 상환금

|                                                   |                  |
|---------------------------------------------------|------------------|
| 금 액                                               | 총계 :<br>원금<br>이자 |
| 납 부 기 한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납 부 기 관                                           |                  |
| 세 입 과 목                                           |                  |
| 영 수 일 자                                           |                  |
| <p>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p> <p>년 월 일</p> <p>구 미 시 장</p> |                  |

## 영수필통지서

(     분기 ) 설치 부담금 상환금

|                                                            |                  |
|------------------------------------------------------------|------------------|
| 금 액                                                        | 총계 :<br>원금<br>이자 |
| 납 부 기 한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납 부 기 관                                                    |                  |
| 세 입 과 목                                                    |                  |
| 영 수 일 자                                                    |                  |
| <p>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구미시장 귀하</p> |                  |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부 담 금

(    월분 ) 사용료 부담금 납부고지서

|                                                                                                   |                  |  |  |
|---------------------------------------------------------------------------------------------------|------------------|--|--|
| 금 액                                                                                               | 총계 :<br>원금<br>이자 |  |  |
| 납 부 기 한                                                                                           |                  |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
| 납 부 기 관                                                                                           |                  |  |  |
| 세 입 과 목                                                                                           |                  |  |  |
| 부담근거                                                                                              |                  |  |  |
|                                                                                                   |                  |  |  |
|                                                                                                   |                  |  |  |
| <p>부과일자 :      년      월      일</p> <p>상기와 같이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br/>사용료를 고지합니다.</p> <p>구 미 시 장</p> |                  |  |  |

## 영수증

(      월분 ) 사용료 부담금

|                                                                        |                  |
|------------------------------------------------------------------------|------------------|
| 금 액                                                                    | 총계 :<br>원금<br>이자 |
| 납 부 기 한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납 부 기 관                                                                |                  |
| 세 입 과 목                                                                |                  |
| 영 수 일 자                                                                |                  |
|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                  |
| <div> <div>년</div> <div>월</div> <div>일</div> </div> <div>구 미 시 장</div> |                  |

## 영수필통지서

( 월분) 사용료 부담금

|                                                            |                  |
|------------------------------------------------------------|------------------|
| 금 액                                                        | 총계 :<br>원금<br>이자 |
| 납 부 기 한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납 부 기 관                                                    |                  |
| 세 입 과 목                                                    |                  |
| 영 수 일 자                                                    |                  |
| <p>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구미시장 귀하</p> |                  |

| <h2 style="margin: 0;">제 호 독 축 장</h2>                                                                                                                                                                                                                                                                                          |         |         |       |       |
|--------------------------------------------------------------------------------------------------------------------------------------------------------------------------------------------------------------------------------------------------------------------------------------------------------------------------------|---------|---------|-------|-------|
| 상 호                                                                                                                                                                                                                                                                                                                            |         | 성명(대표자) |       |       |
| 주 소                                                                                                                                                                                                                                                                                                                            |         |         |       |       |
|                                                                                                                                                                                                                                                                                                                                |         |         |       |       |
| 구 분                                                                                                                                                                                                                                                                                                                            | 체 납 기 간 | 체 납 금 액 |       |       |
|                                                                                                                                                                                                                                                                                                                                |         | 계       | 부 담 금 | 가 산 금 |
| 설 치 부 담 금                                                                                                                                                                                                                                                                                                                      |         |         |       |       |
| 사 용 료                                                                                                                                                                                                                                                                                                                          |         |         |       |       |
| <p style="margin-top: 20px;">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br/>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top: 2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b>구 미 시 장</b></p>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li> <li>2. 이 독촉장을 받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li> <li>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ol>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소장”이란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u>운영관리</u> 책임자를 말한다.<br><br>2. ~ 5. (생략)<br><u>&lt;신설&gt;</u><br>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포함한다.<br><u>&lt;신설&gt;</u><br><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br>-----.<br>1. “수탁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 <u>운영·관리</u> 업무를 위탁받은 <u>운영관리</u> -----.<br>2. ~ 5. (현행과 같음)<br><u>제2장 운영·관리</u><br>제4조(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u>운영·관리</u> 한다.<br><br>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u>운영·관리</u> 하게 할 수 있다.<br>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

<신 설>

<신 설>

<신 설>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수탁 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3(지휘·감독) 시장은 위

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의4(처리상황의 감사) 시장

제2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신 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생 략)

②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

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3장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  
-----  
-----  
-----  
---- 시장-----  
-----  
②-----  
-----  
----- 시장-----  
-----  
③-----  
----- 시장-----  
---- 접속시켜야 하며, 맨홀에 접속하여 매립하기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

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는 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유량계의 종류는 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생략)

④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  
-- 배출하고자 하는 -----  
-----  
-----.  
-----  
-----  
---- 시장-----  
-----  
-----.

②----- 시장-----  
-----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

(장)는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배수기준) (생략)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장)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소장은 필요시 배수설비에 대한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 제3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

##### <신 설>

제15조(설치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 제14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설치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부담금의 재산정)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  
-----  
-----  
-----  
--- 시장-----  
-----  
-----.

제12조(배출허용기준) (현행과 같음)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  
-----  
----- 시장-----  
-----  
-----.

#### <삭 제>

##### 제4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5조(설치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 -----  
-----  
-----  
----- 시장-----  
-----  
-----.

제18조(설치 부담금의 재산정) --  
-----  
-----

폐수의 오염부하량(소장이 정상 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평균치)이 설치 부담금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오염부하량으로 설치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제4장 사용료의 부담

##### <신 설>

제19조(사용료의 부담) ①·② (생 략)

③소장은 처리시설 사용료 실적 자료에 따라 2년마다 사용료 산출기준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① 소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을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 ①소장은 비용부담금의 산정을 위하

-----시장-----  
-----  
-----  
-----  
-----  
-----  
-----.

##### <삭 제>

#### 제5장 사용료의 부담

제19조(사용료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  
-----  
----- 수정-----  
-----.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  
--- 월별-----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 ①시  
장-----

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인정할 수 있다.

②제9조 단서조항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소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③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부담금의 추정) 소장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

-----  
-----  
-----  
-----  
-----  
-----  
-----  
-----.

②시장은 제9조제1항의 -----  
-----  
-- 대하여 -----  
-----  
-----.  
-----  
----- 시장-----.

③사업자가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수탁자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부담금의 추정) 시장----  
----- 배출기준-----

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  
-----  
-----  
-----  
-----.

제23조의2(배출부과금) ①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수탁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관할유역환경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신 설>

제25조(가산금) ①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제6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5조(가산금) ①----- 경우,

는 소장은 자동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6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27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소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

시장-----  
-----  
-----  
-----.

제26조(독촉) -----  
----- 경우,  
시장-----  
-----  
-----  
-----  
-----.

제27조(체납처분) -----  
-----  
-----  
----- 시장-----  
-----  
-----  
-----  
-----.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시장-----  
-----  
-----  
-----  
-----  
-----.

②-----

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의 제한) ① 소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제9조에 따른 유량계·pH계 등 이 조례에 따른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  
-----  
----- 시장  
-----.

제30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  
-----  
-----  
----- 시장-----  
-----.

② (현행과 같음)

제7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의 배수설비의 설치 및

|                                                     |                                                                                                                                                                                                                                                                                                                                                                                                                                 |
|-----------------------------------------------------|---------------------------------------------------------------------------------------------------------------------------------------------------------------------------------------------------------------------------------------------------------------------------------------------------------------------------------------------------------------------------------------------------------------------------------|
|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u>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u></p> <p><u>2. 제9조의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u></p> <p><u>3. 제13조의 배수설비 개·보수에 관한 사항</u></p> <p><u>4. 제22조의 오·폐수 산정에 관한 사항</u></p> <p><u>5. 제28조의 자료 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항</u></p> <p><u>6. 제31조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u></p> <p><u>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u></p> <p><u>제33조(시행규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u>제3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
|-----------------------------------------------------|---------------------------------------------------------------------------------------------------------------------------------------------------------------------------------------------------------------------------------------------------------------------------------------------------------------------------------------------------------------------------------------------------------------------------------|

## 관계법령

###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 요인

：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4조)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산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 2018.10.23)”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 기준 준용  
나. 비용추계 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21. 1월~25. 12월)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 연 도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구 분         |         |         |         |         |         |         |           |
| 세입          | ◦사용료(a) | 162,000 | 162,000 | 162,000 | 162,000 | 162,000 | 810,000   |
| 세출          | ◦운영비(b) | 398,167 | 410,113 | 422,417 | 435,090 | 448,143 | 2,113,930 |
| □ 총 비용(a-b) |         |         |         |         |         |         |           |

- ☞ 세입(사용료)의 경우 2019년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 적용
- ☞ 세출(운영비)의 경우 1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 반영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 연 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 분  |  |         |         |         |         |         |           |
| 국·도비 |  |         |         |         |         |         |           |
| 시 비  |  | 398,167 | 410,113 | 422,417 | 435,090 | 448,143 | 2,113,930 |
| 기 타  |  |         |         |         |         |         |           |
| 합 계  |  | 398,167 | 410,113 | 422,417 | 435,090 | 448,143 | 2,113,930 |

## 5. 부대의견 : 없음

## 6. 작성자 : 환경보전과 김기성(054-480-5282)

| 소 관 부 서     |       | 환경보전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우 준 수               |
|             | 담 당   | 이 화 형               |
|             | 담 당 자 | 김 기 성<br>(480-5282) |